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4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증인의 증언 거부 제한〉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27호)

2024. 10.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훈기 · 이광희 · 김태선 · 정을호 · 김교홍 · 문정복
김태년 · 박희승 · 이병진 · 이성윤 · 이재강 · 박홍배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9. 24.

3. 회 부 일 : 2024. 9. 25.

※ 의안번호 : 42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거나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증언 등의 거부가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현행법의 증인 보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고

받은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증인의 증언 등을 거부할 권리와 증언 등에 대한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증인이 「국회법」에 따른 탄핵소추의 의결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3조(증언 등의 거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증인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소추의 의결 또는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없다.

현행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 등은 안전심의, 국정감사·조사 또는 청문회를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¹⁾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출석·증언²⁾하여야 함.

1)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받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³⁾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증인 본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때⁵⁾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증언거부권은 영미법상의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의 강요금지와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진실한 증언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고려에 기인한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4)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증언이란 공소제기 전에 타인의 사건에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면 자기나 근친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유죄의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이란 기소는 되었어도 판결의 선고가 없는 사이에 타인의 사건에서 증언함으로써 인하여 자기 또는 근친자에게 유죄의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함(이재상·조균석·이창은, 「형사소송법」 (제15판), 박영사(2023), p.560).

것으로,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제2항⁶⁾의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금지
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⁷⁾

개정안은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이 탄핵소추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더하여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⁸⁾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안전심의, 국정감사·조사 또는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탄핵소추 의결은 증인의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재 증언거부 사유로 활용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탄핵소추 의결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로 법률에 명문화하면 탄핵소추를 이유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실익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로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가 가능한 데 반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6)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7) 이재상·조균석·이창운, 「형사소송법」 (제15판), 박영사(2023), p.560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하는 범죄행위는 불출석 등의 죄(제12조), 국회모욕의 죄(제13조) 및 위증 등의 죄(제14조)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법률」에 따른 불출석 등의 죄 등에 대한 고발의 경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 등이 있더라도 증언거부가 불가능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